

연구보고서 2018-11

하도급공사 간접비 지급 개선방안

2019. 3.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진

이 보 라	연구위원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박 승 국	연구위원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 종 광	선임연구위원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발 간 사

공정위는 2017년 12월에 공정한 하도급거래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하도급대금 증액 의무화 등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장기 계속공사의 추가 간접비 미지급의 대법원 판결에 따라 수급인의 간접비 확보가 보다 어려워졌으며, 하부단계인 하수급인 또한 사실상 불이익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전문건설업체의 간접비 지급 상황은 직접비 지급에 비해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단계별 건설시스템상 발주기관과 수급인 간의 간접비 지급 분쟁은 하부단계인 하수급인과 건설근로자 및 자재장비대여업자의 체불에 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에 본 연구는 하수급인의 간접비 계상실태를 파악하여 이에 발생하는 문제점을 도출 후 간접비 미계상 유형 및 실태를 파악하여 적정한 간접비 지급이 가능하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연구가 건설기업뿐만 아니라, 건설자재, 건설기계 등 관련 업체의 향후 경영 개선에 도움이 되고, 건설산업이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본 연구를 수행한 연구원들과 자문위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달합니다.

2019년 3월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원장 서 명 교

I. 서 론

- 하수급인은 계약 이행에 소요된 간접비를 부담하나 수급인은 연금·건강보험료 등 법령상 간접비만을 하도급내역서에 반영하고 있음. 또한 공기 연장시 발생하는 간접비를 당초 계약시 포기하게 하거나 추가공사 미확보 등의 사유를 들어 하수급인에게 제대로 지급하고 있지 않고 있음.
- 간접비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하수급인의 적정한 공사금액 반영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공사품질 저하와 하도급업체의 경영 악화 등을 야기하며 아울러 일용직 근로자의 처우 악화가 결국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
- 하수급인의 간접비 지급 실태를 정확히 파악 후 도출되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간접비 관련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하수급인의 적정한 간접비 지급을 실현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II. 하도급공사 간접비 지급 실태

(1) 간접공사비 미계상 실태

- 불공정 하도급거래(불공정 특약관련)는 비용문제로 간접비는 공사비 거래보다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하며, 내역조차 제대로 작성되지 않음.

-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 신청 건수 총 382건 접수, 공사대금 미지급이 가장 높은 45% 차지, 추가공사 대금에 대한 지급분쟁금액이 하도급 분쟁중 가장 심각함.
- 미지급된 추가공사비를 항목별로 구분했을 때, 공기 연장시 발생하는 추가공사비 미지급이 가장 높았으며(33.0%), 이러한 요인 공기 연장시 발생하는 돌관공사비, 간접비 등 공사금액과 직접 연관된 공사여건의 변화가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함.
- 전문건설업체별 하도급계약서 내역서를 비교한 결과, 법적 의무 간접비 항목만 내역서에 제시되어 있고, 이외 항목은 일부 및 전체가 누락되는 등 업체별로 상이함.(하도급업체 내역서상 작성되어야할 총 17개 간접비 항목 중 10개 항목 삭제됨)

(2)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미지급 실태

- 원도급업체가 지급하지 않는 추가공사비는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공사비 미지급 비율이 33%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원도급업체가 간접비 및 추가공사비를 지급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발주자로부터 비용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분석됨.
- 공기연장시 간접비 지급 포기각서 등으로 하수급인의 간접비 미지급 사례임. 실제 현장관리방안, 현장설명서에 부당특약의 일부 내용을 추가하여 간접비 미지급에 대한 추가요구 등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임.

III. 하도급건설공사 간접공사비 지급을 위한 개선방안

- 간접비 미계상의 경우, 하도급내역서에 간접비 항목의 반영과 불공정 하도급계약에 대한 내용이며, 간접비 미지급의 경우 공기연장시 발생하는 간접비 미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간접비 미지급시 하수급인의 미지급 확보 방안, 하도급대금 조정 규정에 공기연장 사유를 추가하도록 관련 제도를 제안하였음.



[그림] 문제점 별 개선방안

IV. 결론

- 하도급거래는 근본적으로 경제적 힘의 불균형이 존재하기 때문에 불공정한 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사회적 약자인 하수급인이 수급인과의 거래관계에서 상호 대등한 계약관계가 형성되기 어려운 실정임.

- 전문건설업체의 간접비 미지급은 근본적으로 원·하도급의 불공정한 거래구조로 인한 것으로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어 건설공사의 하도급을 받는 전문건설업체가 적극적으로 대처방안을 마련하여 간접비를 스스로 확보하기에는 한계를 안고 있음.

- 간접비 미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모두의 종합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적정한 설계내역서 작성과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발생에 대한 적극적인 모니터링, 정기적이며 지속적인 관리감독 등을 통해 간접비 미지급 관행을 단절하여 하수급인의 위험부담 감소 및 하도급대금관련 분쟁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임.

- 목 차 -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방법	3
3. 연구내용	4
제2장 하도급공사 간접비 관련 문헌고찰	5
1. 간접비 개념 및 구분	5
2. 간접비관련 법령 및 규정 고찰	9
3. 선행연구 고찰	14
제3장 하도급건설공사 간접비 지급실태	15
1. 간접공사비 미계상 실태	18
2.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미지급 실태	27
4장 하도급 간접비 지급을 위한 개선방안	33
1. 간접공사비 미계상에 대한 개선방안	34
2.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미지급에 대한 개선방안	40
3. 발주자 및 공사감독관의 관리감독 조정시스템 기능 강화	47
4. 종합	48
제5장 결론	51
참고문헌	53

- 표 목 차 -

〈표 2-1〉 공사비 구성	8
〈표 2-2〉 공기연장관련 법령 및 규정	12
〈표 3-1〉 하도급계약시 빈번하게 나타나는 특약조항의 내용	16
〈표 3-2〉 건설하도급 분쟁조정 현황	17
〈표 3-3〉 종합건설업 완성공사원가 분석	18
〈표 3-4〉 간접비 미계상 원인	21
〈표 3-5〉 국내(개별)완성공사 원가명세서	22
〈표 3-6〉 설계 및 원도급사 공사발주내역 비교표(S건설 예시)	26
〈표 4-1〉 간접비 미계상에 대한 하도급법 개정안	35
〈표 4-2〉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안(예시1)	38
〈표 4-3〉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안(예시2)	39
〈표 4-4〉 간접비 부당특약관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41
〈표 4-5〉 수급인의 간접비 지급관련 하도급법 개정안(1)	43
〈표 4-6〉 수급인의 간접비 지급관련 하도급법 개정안(2)	44
〈표 4-7〉 공기연장에 따른 하도급법 개정안	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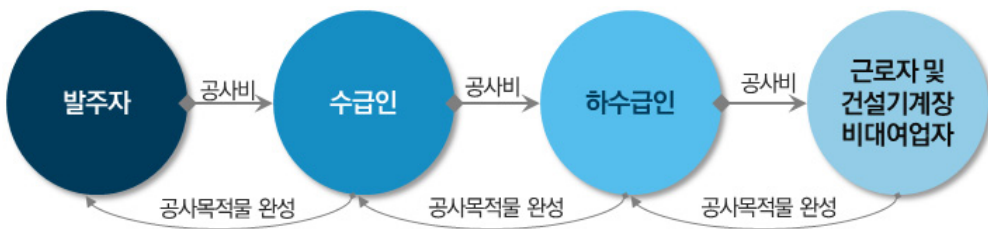
- 그림 목 차 -

[그림 1-1] 건설공사 구성	1
[그림 2-1] 공사계약금액 조정 제도 체계	13
[그림 3-1] 원도급업체가 지급하지 않은 추가공사비 항목 분포	17
[그림 3-2] 전문건설업체별 설계내역서상 간접비 분포	23
[그림 3-3]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지급 발생	27
[그림 3-4] 원도급업체가 추가공사비를 지급하지 않는 이유	28
[그림 3-5] 간접비 미청구 현장설명서(발취)	30
[그림 4-1] 문제점 별 개선방안	33
[그림 4-2] 하도급 간접공사비 개선방안 종합	49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건설공사의 공정한 하도급거래는 하도급자의 적정한 공사비를 적정한 시기에 지급하는 데서 출발하며, 정부 등 관련기관에서 적정 공사비 확보를 위한 여러 방안을 제안하고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12월 17일에 공정한 하도급거래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여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하도급대금 증액 의무화 등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음.
- 최근 장기계속공사의 추가 간접비 미지급의 대법원 판결로 인해 수급인의 간접비 확보가 보다 어려워짐에 따라 하수급인 또한 사실상 불이익을 받을 여지가 있음.
- 단계별 건설시스템상 발주기관과 수급인간의 간접비 지급 분쟁은 하부단계인 하수급인과 건설근로자 및 자재장비대여업자의 체불에 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음.



[그림 1-1] 건설공사 구성

□ 건설공사 간접비 지급현황을 살펴보면, 하수급인은 계약 이행에 소요된 간접비를 부담하나 수급인은 연금건강보험료 등 법령상 간접비만을 하도급내역서에 반영하고 있음. 또한 공기 연장시 발생하는 간접비를 당초 계약시 포기하게 하거나 추가공사 미확보 등의 사유를 들어 하수급인에게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음.

□ 이와 같이 간접비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하수급인의 적정한 공사금액 반영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공사품질 저하와 하도급업체의 경영악화 등을 야기하며 아울러 일용직 근로자의 처우 악화가 결국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

□ 그러나 하수급인은 수급인과 향후 거래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 간접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도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쉽지 않음.

- 하도급업체는 대부분 원도급업체의 협력업체로 등록되어 있어 추후 발주에 막대한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하구조이기 때문임.

□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수급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 연장시 실비범위 안에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함. 그러나 발주기관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간접비를 미조정하거나 계약상대자(수급인)의 간접비만 조정하고 있음. 이에 수급인 역시 간접비 부족을 이유로 하수급인의 간접비는 반영조차 하지 않고 있음.

- 발주기관 및 수급인은 하수급인의 간접비를 불인정하고 있어 근로자 임금 및 자재·장비대금 체불의 원인이 되고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하수급인의 간접비 지급 실태를 정확히 파악 후 도출되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간접비 관련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하수급인의 적정한 간접비 지급을 실현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2. 연구방법

1) 문헌연구 및 제도조사

- 간접비 관련 문헌연구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제도를 조사하여 간접비 정의, 개념, 범위를 살펴보았음.

2) 자문 및 면담 조사

- 실제 전문건설업체의 간접비 지급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전문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실시하였음.
- 전문건설업체 간접공사비 관련 담당자 및 전문가 인터뷰와 하도급 간접비 미계상 원인 및 문제점 분석을 위해 설계내역서상 간접비 미반영과 공기 연장 등에 따른 간접비 미지급 현황으로 구분하여 업체의 견 및 실태를 파악하였음.
- 관련 전문가(건설공사 간접비 전문변호사, 관련 연구기관, 전문건설업체) 회의를 통해 최근 발주자와 수급인간의 장기계속공사의 연차별 계약시 간접비 지급 판례 분석을 통해 내용과 시사점을 파악하였음.

3) 사례조사

- 하도급 간접비 지급실태를 알기위해 전문건설업체 하도급내역서와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데이터, 전문건설협회 하도급 면담자료를 참고하여 사례를 분석하였음. 분석내용으로는 간접공사비 구성항목, 간접비 관련 분쟁내용, 간접비 관련 불공정 하도급 실태 등을 파악하였음.

3. 연구내용

- 본 연구는 하도급공사의 하도급대금 중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간접비 계상 혹은 미지급 및 불인정 현황 등 간접비의 지급실태 및 현황을 면밀하게 파악 후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사항을 제안하고자 함.

1) 하도급공사 간접비 지급 실태 분석

- 하도급내역서에 반영되는 간접비항목 분석
- 공기연장시 발생하는 추가 간접비 미지급 분석

2) 하도급공사 간접비 지급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

- 하도급내역서 반영을 위한 개선방안(하도급법, 표준하도급계약서)
- 공기 연장시 하도급 간접비 반영 방안 마련(하도급법, 건산법)

1. 간접비 개념 및 구분

1) 간접비 정의

- 간접비란 공사에 직접 소요되는 노력, 재료 등 소위 직접비 외에 간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예를 들면 공사용 건물, 동력, 교통·통신, 현장 감독 및 노무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본지점 경비 및 기타의 제경비(건설용어대사전 참고)를 말함.
- 통상(通常)시공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직접공사비라 하며, 계약금액 중 직접공사비를 뺀 나머지 차액금액은 간접공사비라 함. 즉, 현장 사무실과 본사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말함.
- 전(全)계획사업에 관련되어 발생하는 비용으로, 그 비용에는 공사감리자 및 비시간제 인원의 간접임금, 현장 사무실의 임차료 및 이와 관련된 설비공급비, 사무비, 사무장비의 임차료, 관리비, 시설감가상각비 등 이 포함되며, 공기가 지연되면 이와 비례하여 증가한다고 정의되어 있음.(건축용어사전 참고)
- 간접공사비란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법정경비 및 기타 부수적인 비용을 말하며, 직접공사비 총액에 비용별로 일정요율을 곱하여 산정함.(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39조)

- 즉, 건설공사에서 간접비는 현장사무소 운영비용 및 현장관리 인력 비용, 자재의 보관 및 관리 비용 등으로 공사에 직접 소비되지는 않지만 공사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비용이며, 공기가 지연되면 증가하는 것으로 현장유지를 위한 소요비용임.

2) 간접비 구성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39조 2항에서 정의하는 간접비(간접공사비)의 항목에는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기타 관련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지워진 경비로서 공사원가 계산에 반영토록 명시된 법정경비, 기타간접공사경비(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 교통비, 통신비, 세금과 공과, 도서인쇄비 및 지급수수료)를 말한다.

- 간접노무비는 직접 제조작업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작업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의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함.
- 복리후생비는 계약목적물의 제조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노무자, 종업원 등의 의료 위생약품대, 공상치료비, 지급피복비, 건강진단비, 급식비("중식 및 간식제공을 위한 비용을 말한다."이하 같다)등 작업조건유지에 직접 관련되는 비용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작업현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비용임.

- 보험료는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말하며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함.
- 소모품비는 작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문방구, 장부대 등 소모품 구입비용을 말하며 보조 재료로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함.
- 여비·교통비·통신비는 작업현장에서 직접 소요되는 여비 및 차량유지비와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를 말함.
- 세금과 공과는 해당 제조와 직접 관련되어 부담하여야 할 재산세, 차량세 등의 세금 및 공공단체에 납부하는 공과금을 말함.
- 도서인쇄비는 계약목적물의 제조를 위한 참고서적구입비, 각종 인쇄비, 사진제작비(VTR제작비를 포함한다)등을 말함.
- 지급수수료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수수료에 한하며, 다른 비목에 계상되지 않는 수수료를 말함.
- 기타 법정경비는 위에서 열거한 이외의 것으로서 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경비를 말함.

〈표 2-1〉 공사비 구성

구 분		해당 항목 및 내용
공사비	직접공사비	직접재료비(주요재료비, 부품비) 직접노무비 직접공사경비
	간접공사비	간접재료비(소모재료비, 소모공구·기구·비품비, 가설재료비)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바교통바통신비 세금과 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기타 법정경비
일반관리비		(직접공사비+간접공사비)×일반관리비율(%)
이윤		(직접공사비+간접공사비+일반관리비)×이윤율(%)
공사손해보험료		공사손해보험가입 비용
부가가치세		-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참고(2018.6.7. 시행·일부 개정)

2. 간접비관련 법령 및 규정 고찰

1) 하도급내역서상 간접비 관련

- 간접비 항목을 관련법상 하도급내역서에 명시하도록 규정된 항목과 그렇지 않은 항목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규정된 간접비 항목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고용보험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와 하도급대금지급보증에 발급되는 수수료(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발급되는 수수료(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가 있음.

- 법과 달리 의무가 아닌 권장사항으로 표준하도급계약서에서 규정하는 간접비 항목으로는 안전관리비(제20조), 건설폐기물의 처리(제46조) 등이 있음.

- 그 이외 하도급공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항목에는 간접노무비 등이 있음.

2)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 건설공사계약은 단기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이행되며 지속되는 기간 동안 현장의 물가변동, 설계변동, 공사기간 연장 등이 발생함.

- 이러한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당초 설정된 계약내용이 변경되며 이는 계약금액의 변경으로 이어짐.
 - 국내 공공 공사에서는 계약 내용의 변경에 따라 공사가 원만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국가계약법 및 관련 예규를 통해 물가변동, 설계변경, 기타 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규정을 두어 계약내용 변경 사안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고 있음.

 - 공기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기타 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조항 및 관련 예규를 통해 추가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공기연장은 국가계약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과 계약예규에서 규정하고 있음.
 - 국가계약법은 제19조(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서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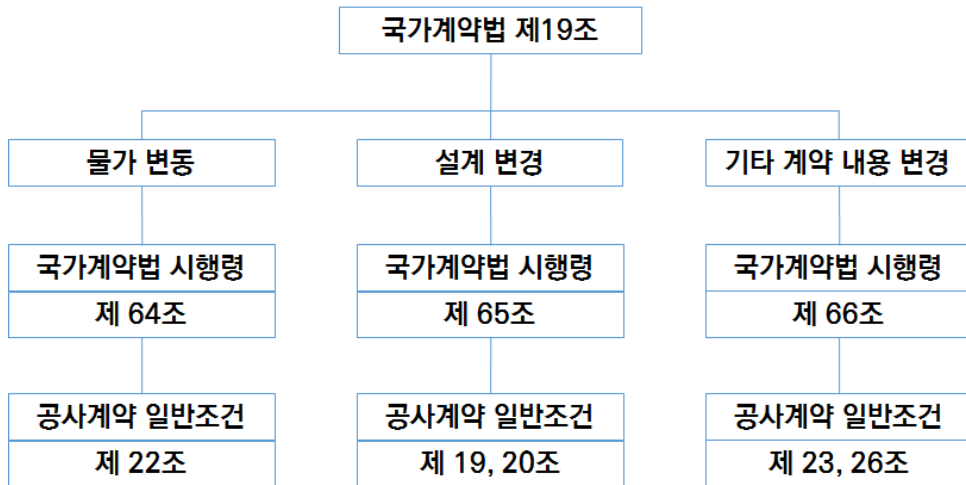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6조(기타 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의 규정에 의한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실비조정 시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제출된 산출내역서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요율을 초과할 수 없음을 명시함.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은 제74조의3(기타 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의 제1항에서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그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하여야 하며,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 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 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우선 이행하게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표 2-2〉 공기연장관련 법령 및 규정

관련 법령 및 규정		구 분	내 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	제19조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시행령	제66조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행규칙	제74조의3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25조	지체상금
		제26조	계약기간의 연장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	제32조	불가항력	
	제47조	공사의 일시정지	
	제71조	실비의 산정	
	제72조	실비산정기준	
	제73조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	
	제74조	설계서 작성 시 주의사항/운반거리변경에 따른 실비의 산정	
제75조	기타 실비의 산정		
제76조	일반관리비 및 이윤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5조	공무원가	
	제16조	작성방법	
	제17조	재료비	
	제18조	노무비	
	제19조	경비	
	제20조	일반관리비	
	제21조	이윤	
	제22조	공사손해보험료	
	별표2-1	공무원가계산시 간접노무비 계산방법	

3) 계약금액 조정

- 국가계약법 제19조는 계약금액의 조정이 필요한 사유를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 밖의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구분하고 국가계약법 시행령에서 각각 구체적 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음.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인 공사계약일반조건도 설계변경, 물가변동,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나누어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기타 계약내용은 공사 물량의 증감이 수반되지 않는 점에서 설계변경과 구분됨.¹⁾



[그림 2-1] 공사계약금액 조정 제도 체계

1) 김태형, 간접비 소송의 주요 쟁점, 변호사, 2016, p.114.

3. 선행연구 고찰

□ 간접비 지급관련 연구문헌에는 누락 혹은 삭제된 간접비 항목과 공기 연장시 간접비 산정방식의 제안으로 실태 파악 후 법규제안 및 산정 방식을 제안하고 있음.

- 간접비 지급실태 및 개선방안으로는 조현정(2017), 하도급 간접공사비 계상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 간접비 미계상 실태 파악(내역서 및 설문조사)후 개선방안 제안, 조동희(2017), 공공공사의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문제의 제도적 개선 방안으로 효율적인 네트워크공정표(Network Analysis System) 제도의 도입 제안 등이 있음.
- 간접비 산정방식의 제안에는 정기창(2017), 공기연장 추가간접비 예측을 위한 현장관리비(job-site overhead cost) 산정모델 도출과 최민섭(2010), 공기연장에 따른 합리적인 간접비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에서 공기연장 간접비 산정기준인 회계예규의 실비산정 기준과 공공기관의 연장비용지급사례를 통한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계상방법을 제시함.
- 김용균(2016)은 건설공사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용 관련 연구에서 공공공사 공사기간 연장관련 산정방법 제시하였으며, 김효정(2011)은 건설공사 계약기간 연장과 간접비의 산정방법에 관한 고찰에서 간접비 산정방법을 제안함.
- 조성환(2002)의 건축공사 원가계산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는 각 발주처의 간접비 적용요율에 따라 발주처간 설계금액이 심한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을 문제로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안으로 간접비 적용요율의 상한선 범위를 제안함.

- 공정한도급 거래의 가장 핵심은 공사계약금을 지정된 시기에 계약한 금액을 하도급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거래시 계약당사자간 다툼의 주된 요인은 공사계약금액에 관한 분쟁이 가장 중요한 쟁점임.

- 이중 간접비는 공사비 거래보다 더 많은 문제를 안고 있어, 불공정 하도급거래가 비용에 관한 것으로 직접공사비에 비해 간접비의 경우 내역조차 제대로 작성되지 않고 있음.
 - 공사기간 연장과 같은 공사 중에 발생하는 간접비 미지급뿐만 아니라 직접공사에 필요한 간접비 항목조차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음.

- <표 3-1>은 하도급 계약시 빈번하게 나타나는 불공정 특약에 대한 발생 빈도를 살펴본 것으로 대부분의 불공정 특약은 공사비용과 관련한 내용이며, 이중 간접비 인정 범위를 제안하는 경우가 9.1%를 차지하고 있음.

〈표 3-1〉 하도급계약시 빈번하게 나타나는 특약조항의 내용

(단위 : 업체수, (%))

구 분	업체수(%)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 전가	68 (15.5)
서면(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을 요구하고 발생된 비용 전가	65 (14.8)
입찰내역(산출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하고 발생된 비용 전가	60 (13.7)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른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전가	58 (13.2)
간접비의 인정범위를 일률적으로 제한	40 (9.1)
원사업자(발주자를 포함한다)가 설계나 작업내용을 변경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 전가	39 (8.9)
설계변경,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불인정	39 (8.9)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과 같은 예측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 책임 전가	27 (6.2)
원사업자가 수행해야 할 인허가, 환경 또는 품질관리 등의 비용 전가	22 (5.0)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하자담보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 전가	21 (4.8)
합 계	439 (100.0)

출처: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분석보고서

□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 신청 건수는 2018년간 총 382건이 접수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중복 응답포함), 이중 공사대금 미지급이 가장 높은 비율인 45%를 차지하고 있어 추가공사 대금에 대한 지급 분쟁금액이 하도급 분쟁 중 가장 심각한 것으로 조사됨(〈표 3-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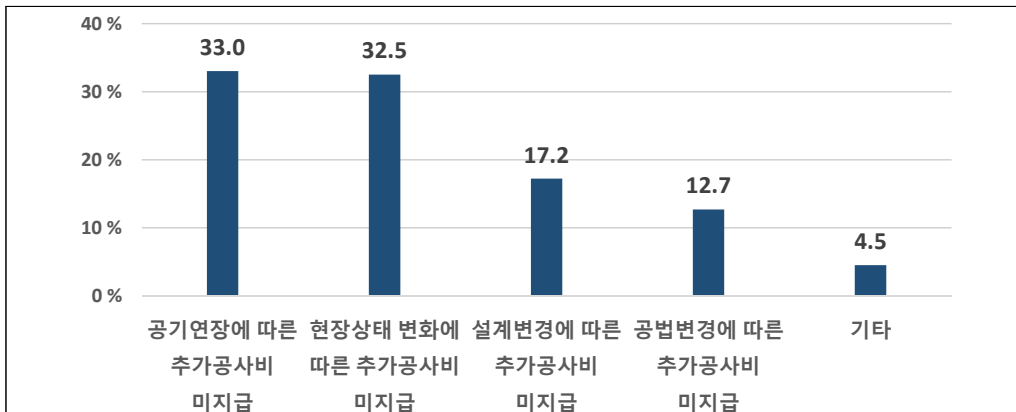
-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전체 전문건설업체 계약건수 664,171건 (2017년)중 약 0.06%를 차지하고 있으며, 계약금액 93,988,798백만 원(2017년)중 0.17%를 차지하고 있음.

〈표 3-2〉 건설하도급 분쟁조정 현황

구 분	해당 건수		해당금액(백만원)	
	건	구성비	금액	구성비
공사대금 미지급	173	45%	55,853	35%
추가공사 대금	115	30%	72,385	45%
어음할인료 지연이자	5	1%	31,954	20%
물가연동 미적용	2	1%		
기타	87	23%		
계	382	100%	160,192	100%

출처: 건설하도급분쟁조정위원회 내부 자료 재작성(2018년 데이터 기준)

□ 미지급된 추가공사비를 항목별로 구분했을 때, 공기 연장시 발생하는 추가공사비 미지급이 가장 높았으며(33.0%), 이러한 공기 연장시 발생 되는 돌관공사비, 간접비 등 공사금액과 직접 연관된 공사여건의 변화가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함([그림 3-1] 참조).



[그림 3-1] 원도급업체가 지급하지 않은 추가공사비 항목 분포

출처: 이보라, 박승국, 추가변경공사에 대한 추가공사비 미지급실태 및 개선방안, 대한건설정책연구원, 2017.

□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간접비 규모를 비교하면 외주비를 제외한 종합건설업의 간접비 비율은 약 30~40%이며, 전문건설업의 간접비 비율은 완성공사원가의 약 5~1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공공과 민간건설이 동일한 규모로 종합건설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전문건설업의 간접비 규모로 인해 공사현장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표 3-3〉 종합건설업 완성공사원가 분석

구분	2015	2016	2017	
재료비	1,267,961	1,347,769	1,405,123	
노무비	소계	268,505	307,682	348,112
	직접노무비	194,007	220,354	239,384
	간접노무비	74,498	87,328	108,727
외주비	2,500,107	2,803,904	3,204,588	
현장경비	622,593	656,797	685,395	
완성공사원가	4,659,165	5,116,153	5,643,218	

1. 간접공사비 미계상 실태

□ 수급사업자는 하도급 입찰시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작성 및 배부한 물량내역서(비목·규격·수량 표기)를 토대로 단가를 산출하여 하도급금액을 확정하고 입찰에 참여함.

□ 심지어 하도급내역서도 원도급자가 직접 작성하여 현장 설명시 일방적으로 배포하여 하도급자가 수정이 불가능함. 즉, 원사업자는 자신이 배부한 물량내역서 비목 등을 하도급자가 추가·변경 못하도록 금지한 것임.

- 발주기관은 시공업체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 등 계약내용이 변경되어 추가비용이 발생 시 관련법령에 따라 실비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토록 규정함.(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6조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 제26조)
- 건설현장은 용지보상 지연, 민원발생, 설계도서 상이 등 시공자의 귀책이 없는 사유로 공기 연장시 시공사는 늘어난 공사기간 만큼 간접비 (직원급여, 현장 유지비 등) 추가비용이 발생함.
- 매년 조사하는 건설하도급 공정거래 체감도 조사²⁾의 간접비 지급실태를 파악한 바, 간접비(직접노무비·경비를 제외한 금액)의 일정범위 일률적 제한 약정의 공정거래 체감도³⁾가 2016년 60.8에서 2017년 62.1의 수준으로 간접비 관련 불공정 행위가 다소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간접비 인정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주요 부당특약의 일부이며 하도급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부당한 특약으로 보는 약정)에서 규정하는 부당특약으로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약정을 말하는 것임.

2)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서 매년 발간하는 건설하도급 공정거래 체감도 조사의 내용을 참고하였음.
 3) 체감정도 단계별로 불공정거래가 '전혀 없다'를 100점으로 하고 불공정거래가 증가하는 단계별로 25점씩 감점하는 방식으로 배점하여 불공정거래가 '매우 많다'의 경우 0점을 배점하여 체감도를 수치화하였음.(불공정 거래가 전혀 없다 100, 별로 없다 75, 보통 50, 다소 있다 25, 매우 많다 0)

- 구체적 내용으로는 1. 비용이나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2. 불합리하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약정, 3. 간접비(하도급대금 중 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인정범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약정이라고 정하고 있다. 다만,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의 계약에서 정한 간접비의 인정범위와 동일하게 정한 약정은 제외하며, 4. 계약기간 중 수급사업자가 법 제16조의2에 따라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 5. 기타 그 외의 약정으로 규정하고 있음.

1) 간접공사비 미계상 원인

□ 전문건설업체 담당자 면담결과 간접비 미계상 원인은 주로 수급인이 당초 설계내역서에 간접비 항목을 축소 및 삭제하는 등 직접공사비 단가에 포함하도록 하거나 수급인의 규정에 따라 작성을 종용하고 있음(〈표 3-4〉 참조).

- 전문건설업체 면담조사 결과 법적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한 간접비 이외의 간접비 항목은 수급인이 작성한 하도급내역서에 작성조차 되어 있지 않고 있음. 이는 공공공사와 민간공사 공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그러나 하수급인 입장에서 추후 공사발주 등을 고려하여 간접비 지급을 요청하지 못하고 있으며, 하수급인은 법적인 항목 이외의 간접비 항목은 제대로 보전 받고 있지 못함.

〈표 3-4〉 간접비 미계상 원인

구 분	해당 비율(%)
수급인이 제시한 간접비 항목이 삭제된 설계내역서대로 하수급인이 작성함	65
하수급인이 간접공사비 정산의 불편함으로 인해 해당 항목 간소화	14
내역서에 기재하였으나, 수급인에 의해 거절	5
간접비 항목 지급에 대한 법적 구속력 없음	4
기타	12
합계	100

출처: 하도급 간접공사비 계상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 자료 재작성

2) 하도급 내역서 작성 실태

□ 일반적으로 수급인이 작성하는 국내건설공사원가내역은 재료비, 외주비, 현장경비로 구성되며, 각각의 항목은 〈표 3-5〉와 같음.

〈표 3-5〉 국내(개별)완성공사 원가명세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1. 재 료 비	-	-
2. 노 무 비	(1) 직 접 노 무 비	1) 기 본 급
		2) 제 수 당
	(2) 간 접 노 무 비	3) 상 여 급
		4) 퇴직급여충당부채전입액
3. 외 주 비	-	-
	4. 현 장 경 비	1) 전 력 비
		2) 수 도 광 열 비
		3) 운 반 비
4) 기 계 경 비		
1) 중기임차료		
2) 중기감가상각비		
3) 수선유지비		
4) 보관운반비		
5) 기 타		
(5) 특허권 사용료		
(6) 기 술 료		
(7) 연 구 개 발 비		
(8) 품 질 관 리 비		
(9) 가 설 비		
(10) 지 급 임 차 료		
(11) 보 험 료		
(12) 복 리 후 생 비		
(13) 보 관 비		
(14) 외 주 가 공 비		
(15) 안 전 관 리 비		
(16) 소 모 품 비		
(17) 여비·교통비·통신비		
(18) 세 금 과 공 과		
(19) 폐 기 물 처 리 비		
(20) 도 서 인 쇄 비		
(21) 지 급 수 수 료		
(22) 환 경 보 전 비		
(23) 보 상 비		
(24) 안 전 점 검 비		
(25) 퇴직공제부금비		
(26) 기 타 법 정 경 비		
(27) 감 가 상 각 비		
(28) 하 자 보 수 비		
(29) 현장 관리비 (기타)		
5. 완 성 공 사 원 가	-	-
6. 당공사계약액(부가세제외)	-	-
7. 예정가격	-	-

- 하도급공사에서 간접공사비 계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계약서 및 내역서를 비교분석하였음(〈표 3-6〉 참조).
- 조사결과 전문건설업체별 각기 다른 간접비 항목을 구성하고 있음. 구성항목으로 살펴보면 법적 의무 간접비 항목만 내역서에 제시되어 있으며, 그 이외 항목은 업체별 상이하게 나타남.

A 사	B 사	C 사	D 사
간접노무비			
		사용자배상보험료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고용보험료	고용보험료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퇴직공제부금비	퇴직공제부금비	퇴직공제부금비
기타경비			
안전관리비	안전관리비	안전관리비	안전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공사이행보증수수료			
			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
일반관리비			
		매입부가세	매입부가세
공과잡비	공과잡비		공과잡비
			폐기물처리비

[그림 3-2] 전문건설업체별 설계내역서상 간접비 분포

※ 건설공사 성격에 따라 법적 해당 보험료 항목 유무가 달라질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 공사기간 1개월 이상, 퇴직공제부금비: 추정금액 3억원이상 건설공사)

- 이처럼 계약 내역서 별로 간접공사비 항목의 구성이 상이했으며, 설계 내역서에 간접비 항목이 구성되었더라도 제대로 계상된 항목이 아니라 비용의 일부 및 전체 누락되어 있기도 함.
 - A사 처럼 각각 분개되어 구성되어야 공사 수량 증감 및 공사 기간 단축 또는 연장에 따른 초과 비용의 비용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할 수 있으나, B사 처럼 관리비 및 이윤으로 합쳐지거나 C사, D사 처럼 공과잡비로 통틀어 구성된 내역이 더 많이 나타났음.
- 원도급과 하도급 내역서가 동일하지 않음. 즉, 원도급 내역서와 하도급 내역서에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간접비 항목일지라도 원도급자가 일방적으로 간접비 내역을 삭제하거나 적용 요율을 낮춰 내역을 작성하도록 강요하고 있음.
- 간접비의 법정 요율을 적용받는 4대 보험 등은 설계내역서에 정확하게 반영하는 반면 그 이외 항목은 공과잡비로 묶어서 일괄 처리하여 비용을 축소하고 있음.
- 이처럼 하도급사가 간접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어 원도급사의 간접비는 전체 공사비의 약 30~40%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하도급사의 경우 전체공사비의 약 5% 정도에 그치고 있어, 하수급인의 간접비 부족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됨. 이러한 상황은 공공과 민간의 구분 없이 동일하게 발생하고 있음.
- 세부항목별 내용을 원도급과 하도급 설계내역서를 비교 검토하여 살펴본 결과, 법정 간접비 이외의 하도급간접비 항목은 간접비 항목에서 제외되었음(〈표 3-6〉 참조).

- 법정 간접비 항목인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제외한 간접비는 계상되고 있지 않음. 가설사무실 비용 또한 항목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음.
- 하도급내역서의 하도급사에 해당하는 17개 항목중 10개 항목이 삭제되어 하도급내역서 작성이 이뤄지고 있음.

〈표 3-6〉 설계 및 원도급사 공사발주내역 비교표(S건설 예시)

설계/원도급		하도급		비고
공종명	규격	공종명	규격	
I. 순공사비		I. 순공사비		
가. 직접공사비		가. 직접공사비		
나. 간접노무비	직노×8.9%		현장직원 급료 및 퇴직금	항목없음
다. 산재보험료	노무비×3.8%		근재보험	항목없음
라. 고용보험료	노무비×1.17%	라. 고용보험료	노무비×1.17%	실비정산
마. 건강보험료	직노×1.70%	마. 건강보험료	직노×1.70%	실비정산
바. 연금보험료	직노×2.49%	바. 연금보험료	직노×2.49%	실비정산
사.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보×6.55%	사.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보×6.55%	실비정산
아. 퇴직공제부금비	직노×2.3%	아. 퇴직공제부금비	직노×2.3%	실비정산
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재+직노+지급자재)×2.44%	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재+직노+지급자재)×2.44%	실비정산
차. 기타경비	(재+노)×6.6%		수도광열비 등 현장경비	항목없음
카. 공사이행보증수수료			계약이행보증권, 하자증권 등	항목없음
타. 건설하도급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공사비×0.071%		해당없음(원도급사 부담)	항목없음
파. 환경보전비	공사비×1.5%	파. 환경보전비	공사비×1.5%	실비정산
하.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공사비×0.41%	하.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공사비×0.41%	
II. 일반관리비	(재+노+경)×4.5%		본사관리비	항목없음
III. 이윤	(노+경+일반관)×9.0%			항목없음
IV. 특허권(신기술)사용료				원도급사분
V. 안전점검비	정기안전+초기점검		외부기관 점검(준비 및 조치)	항목없음
설계비, 지장물이설, 수탁공사비 등				원도급사분
		II. 공과잡비	비율은 자율로 정함	하도급사분
VI. 공급가액		III. 공급가액		
VII. 부가가치세	공급가×10%	IV. 부가가치세		
VIII. 도급금액		V. 도급금액		
공사용 자재구입	관급자재			발주처분
건설폐기물 처리비				발주처분
보상비(옹지 등)				발주처분
간접비 계				
IX. 총공사비				
※ 가설사무실			직공비에 포함	항목없음
※ 공사부지 임대료			직공비에 포함 또는 별도항목	항목없음

2.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미지급 실태

1) 발주자에 의한 간접비 미지급

- 건설하도급 계약이행과정에서 하수급인이 지출하는 비용 중 당초 계약 금액 이외 발생하는 간접비는 귀책 여부에 따라 비용부담 주체가 상이함.
- 하수급인의 간접비 미지급 이유는 크게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간접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와 수급인 발주자에게 간접비를 지급받았지만 하수급인에게 간접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음.
 - 본 연구에서는 하수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공기연장은 제외한 발주자와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공기 연장시 발생하는 간접비로 한정함(그림 3-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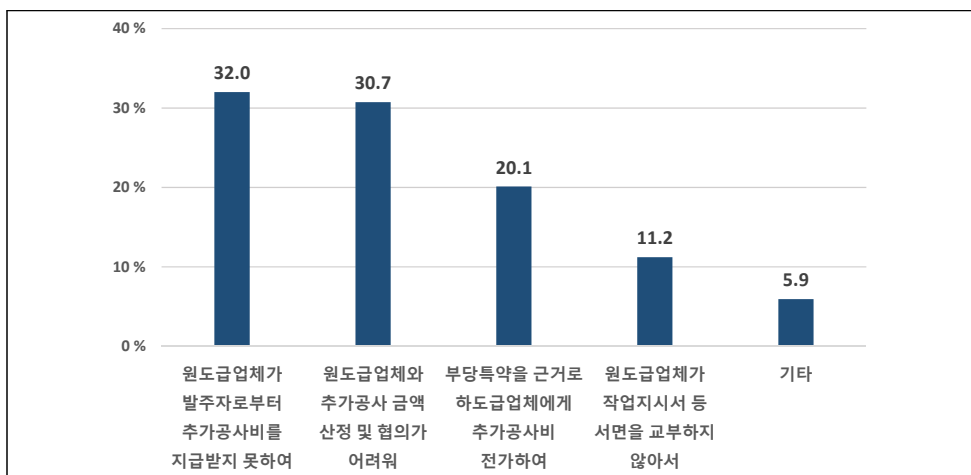


[그림 3-3]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지급 발생

□ 수급인의 간접비 미지급 사유중 발주자에 의한 추가공사비 혹은 간접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하수급인에게 간접비를 지급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원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에게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공사비(간접비 포함)를 지급하지 않은 이유로 32.0% 업체가 원도급업체가 발주자로부터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공사비(간접비 포함)를 지급받지 못하여 하도급업체도 당연히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공사비(간접비 포함)를 받지 못한다고 하였고, 원·하도급간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공사비(간접비 포함) 산정 및 협의의 어려움 때문에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다고 응답한 업체가 30.7%인 것으로 조사됨.

□ 단계별 도급방식인 건설공사의 특성상 각 도급단계마다의 추가공사비 지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도급단계의 맨 마지막인 하도급업체에게까지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전달되고 있음([그림 3-4] 참조).



[그림 3-4] 원도급업체가 추가공사비를 지급하지 않는 이유

출처: 이보라, 박승국, 추가변경공사에 대한 추가공사비 미지급실태 및 개선방안, 대한건설정책연구원, 2017.

2) 수급인에 의한 간접비 미지급

-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서중 간접비 관련 내용과 대한전문건설협회의 하도급상담일지 내용을 분석하여 그 사례를 유형화하였음.

① 간접비 지급 포기 동의서 작성

- 건설공사 설계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한 공사기간 연장으로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간접비 등에 대한 지급 요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강요함으로써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음.

- 수급인은 하수급인으로부터 ‘간접비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한다는 약속 내용이 포함된 동의서’를 받아 설계변경계약서에 첨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공사간접비 최소화를 위한 현장관리 강화방안’에 따라 운영함. 유사한 현장에서 공기 연장 시 동일하게 간접비 미지급관련 약속을 받음([그림 3-5] 참조).

현장관리방안 내용중 일부
...(중략)...
④ 설계변경 등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공사 연장기간 등에 대하여 시공사 동의서를 받아 설계변경계약서에 첨부 의무화
* (동의서 포함 내용) <u>공사 연장기간, 연장 사유, 향후 추가 간접비 발생 비용에 대한 이의제기 미시행 약속 내용 등</u>
...(중략)...

현장설명서

계약번호 제○○○○○-○-○○○-○○○○○-○○호

계약명 A 공사

...(중략)...

- ○○를 준수하며, 간접비 및 경비 관련 추가요구 등 하등의 이의를 제기치 않고 계약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인함. 끝.

[그림 3-5] 간접비 미청구 현장설명서(발체)

□ 수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공기연장 등 설계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추가로 발생하는 간접비 등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동의서를 하수급인으로부터 강요하여 정상적인 하도급거래 관행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임.

- 공사기간 연장으로 간접비 등 추가적인 공사비용이 발생한 거래상 대방의 입장에서는 관계법령 및 일반조건 등 거래조건에 따른 계약 내용의 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 등이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편익을 위해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수급인의 행위는 거래상대방에 직접적인 경제상 불이익을 제공하고 있음.

□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현장설명서에 공기가 연장될 수 있으니 이를 반영하여 견적토록 강요하여 당초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으나 추가비용 협의는 하지 않고 하수급인에게 공기연장을 강요함.

-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미지급으로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지급을 약속했다면 하수급인에게 마땅히 간접비를 지급해야 함.

② 공기 연장시 간접비 미지급

□ 수급인이 공기연장 시에 지급하여야 하는 간접비 등을 하수급인에게 일방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경우임.

□ 발주자가 품질확보를 위한 공기조정, 민원발생 등을 이유로 들어 공사기간을 연장하였음에도 이에 따라 발생한 현장관리 인건비, 산재보험료, 경비, 일반관리비 등의 추가 간접비용을 지급하지 않음.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인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에 의하면, 현장관리 인건비, 산재보험료, 경비, 일반관리비 등의 추가 간접비용을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함. 즉, 발주자는 원수급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인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거래상대방에게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간접비 및 계약보증수수료 등을 증액해 줄 의무가 있음에도, 자신의 거래상지위를 이용하여 이를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거래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고 있음.

□ 선행공정 지연, 이에 따른 동절기 보양공사,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등 원사업자 사정으로 당초 계약 외 추가공사가 발생하였으나 이에 대한 추가비용을 미지급함.

- 선행공종 지연 등으로 착공지연에 따른 관리비 등 추가비용 발생하였으나 미지급하며, 공사기간 중 총 6회에 걸친 공기연장 및 설계변경이 이루어져 공기가 연장되었으나 간접비와 준공금을 지급받지 못함.

③ 공기연장시 간접비 일부 지급

□ 수급인은 거래상대방인 하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발주자의 공사계획 협의지연 등의 사유로 공사기간을 연장하고 이에 대한 간접비용을 반영함에 있어 간접비 일부만을 일부 지급하는 경우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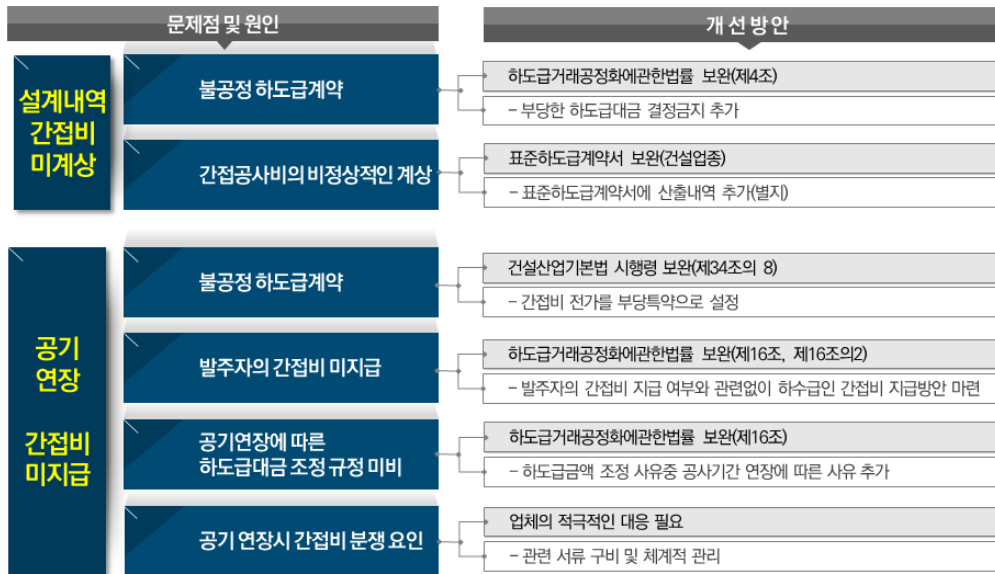
- 공기연장일수가 8.3개월(254일)임에도 불구하고 주요공정의 완료기간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7.3개월분에 대한 간접비만을 일부 지급하고, 나머지 1개월분에 대한 간접비는 지급하지 않는 경우임.

- 추가공사비를 일부 지급하면서 “향후 어떠한 명목으로도 추가공사비를 요청할 수 없다” 및 공상처리 협의시 1차 공상비 지급하면서 “향후 발생하는 산재에 대해서는 공상처리하되 30%는 을이 부담한다.” 등의 특약을 설정하여 해당비용을 전가하기도 함.

□ 공정거래위원회 및 전문건설협회에서 상담한 간접비 관련 상담의 경우 공통적으로 하수급인이 수급인에게 간접비 청구를 요청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실상은 더 많은 간접비 피해사례가 상존할 가능성이 큼.

□ 본 연구에서 수급인과 하수급인간 공사 계약시 하도급공사 간접비를 제대로 지급받기 위한 개선방안은 간접비 미계상과 공기연장시 간접비 미지급으로 구분하여 제안하였음.

- 간접비 미계상의 경우, 하도급내역서에 간접비 항목의 반영과 불공정 하도급계약에 대한 내용이며, 간접비 미지급의 경우 공기 연장시 발생하는 간접비 미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간접비 미지급시 하수급인의 미지급 확보 방안, 하도급대금 조정 규정에 공기연장 사유를 추가하도록 관련 제도를 제안하였음.



[그림 4-1] 문제점 별 개선방안

1. 간접공사비 미계상에 대한 개선방안

1) 간접비 미계상을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에 포함

- 원사업자가 도급내역서상 비목(직접공사비 및 간접공사비·경비·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을 통합하거나 물량 등을 축소한 물량내역서를 제공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사유에 추가하여 간접비 축소 및 삭제 행위를 방지하도록 유도함.

-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중 제2항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사유로 원사업자가 도급내역서상 비목(직접공사비 및 간접공사비·경비·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을 통합하거나 물량 등을 축소한 물량내역서를 제공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추가함.

〈표 4-1〉 간접비 미계상에 대한 하도급법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p>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① 생략</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p> <p>1.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p> <p>2. ~ 7.(생략)</p> <p>8. 계속적 거래계약에서 원사업자의 경영적자, 판매가격 인하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p>	<p>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① 생략</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p> <p>1.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p> <p>2. ~ 7.(생략)</p> <p>8. 계속적 거래계약에서 원사업자의 경영적자, 판매가격 인하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p> <p>9. 원사업자가 도급내역서상 비목(직접공사비 및 간접공사비·경비·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을 통합하거나 물량 등을 축소한 물량내역서를 제공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p>

2) 하도급내역서 항목별 명시

- 시공사와 하도급사 간 계약을 체결하는데 공사 계약에 따른 내역을 기록하는 문서를 하도급 산출내역서라 하며, 내역서상 직접비의 경우 공종별·기술별 투입되는 항목이 상이하고, 간접비의 경우 모든 공사에서 동일하게 적용됨.

- 간접비의 경우 모든 공사 내역서에서 계상되어야 마땅하지만, 표준화된 양식이 없어 시공사별 그 항목이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음.
 - 법정 간접비,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 계상되어야 할 항목이 누락되어 있거나 해당 비용이 직접비에 포함되어 계상되고 있음.
 - 또한 원도급사별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 경비 등을 공과잡비, 경비 및 이윤,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으로 각기 다르게 통합하여 계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이 경우 추후 설계변경에 따라 물량이 증감될 경우 내역서에 수반되지 않은 계약금액의 산정이 곤란하고, 불필요한 비용이 증가(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 통합되어 계상될 경우)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됨.

- 하도급설계내역서에 간접비 항목 및 반영 비율을 정확하게 작성할 것으로 제안하는 것으로 하도급설계내역서에 간접비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항목을 명시하도록 함.
 - 표준하도급계약서에 공사원가 계산서처럼 하도급 산출내역서를 별도로 첨부하도록 함.

- 하도급 산출내역서의 간접비 항목을 표준화하여 법적 간접비 항목 (각종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건설기계대여대금보증수수료 등), 안전관리비,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경비 및 이윤들을 구분하여 작성할 것을 제안함.
- 이때, 공사 특성에 따라 불필요한 간접비항목이 있을 경우 내역서 상에 해당 간접비의 불필요한 사유와 문구를 간략히 작성하도록 하고, 원도급사가 부담하도록 하는 간접비 항목은 내역서 상에 명시하되, 원도급사가 부담한다는 문구를 작성하도록 해야 함.
- 이에 따라 간접비 부분의 적정공사비 확보와 비정상적으로 계상되는 문제를 개선하고, 추후 설계변경이나 공기연장 등에 따른 간접비에 대한 분쟁도 감소할 것임.

〈표 4-2〉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안(예시1)

현 행	개 정 안
<p>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표지)</p> <p>1. 발 주 자 :</p> <p> ○ 도급공사명 :</p> <p>2. 하도급공사명 :</p> <p> ○ 하도급공사 등록업종:</p> <p>3. 공사장소:</p> <p>4. 공사기간: 착공 년 월 일 준공 년 월 일</p> <p>5. 계약금액: 일금 원정(W)) ○공급가액:일금 원정(W)) <u>[노무비:일금 원정(W)]]</u></p> <p>*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한 노무비 ○부가가치세: 일금 원정(W)) ※변경전 계약금액:일금 원정(W))</p> <p>이후 생략</p>	<p>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표지)</p> <p>1. 발 주 자 :</p> <p> ○ 도급공사명 :</p> <p>2. 하도급공사명 :</p> <p> ○ 하도급공사 등록업종:</p> <p>3. 공사장소:</p> <p>4. 공사기간: 착공 년 월 일 준공 년 월 일</p> <p>5. 계약금액: 일금 원정(W)) ○공급가액:일금 원정(W)) <u>[법적 간접비: 일금 원정(W)]]</u> <u>[안전관리비: 일금 원정(W)]]</u> <u>[간접노무비: 일금 원정(W)]]</u> <u>[일반관리비: 일금 원정(W)]]</u> <u>[경비: 일금 원정(W)]]</u> <u>[이윤: 일금 원정(W)]]</u></p> <p>*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한 노무비 ○부가가치세: 일금 원정(W)) ※변경전 계약금액:일금 원정(W))</p> <p>이후 생략</p>

〈표 4-3〉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안(예시2)

구 분	항 목		금 액
공사비	직접 공사 비	직접재료비(주요재료비, 부품비)	원정(W)
		직접노무비	원정(W)
		직접공사경비	원정(W)
	간접 공사 비	간접재료비(소모재료비, 소모공구·기구·비품비, 가설재료비)	원정(W)
		간접노무비	원정(W)
		산재보험료	원정(W)
		고용보험료	원정(W)
		국민건강보험료	원정(W)
		국민연금보험료	원정(W)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원정(W)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원정(W)
		환경보전비	원정(W)
		퇴직공제부금비	원정(W)
		수도광열비	원정(W)
		복리후생비	원정(W)
		소모품비	원정(W)
		여바교통비·통신비	원정(W)
		세금과 공과	원정(W)
		도서인쇄비	원정(W)
		지급수수료	원정(W)
		기타 법정경비	원정(W)
일반관리비	(직접공사비+간접공사비)×일반관리비율(%)	원정(W)	
이윤	(직접공사비+간접공사비+일반관리비)×이윤율(%)	원정(W)	
공사손해보험료	공사손해보험가입 비용	원정(W)	
부가가치세	-	원정(W)	

※ 공사항목 없는 사유: ()

2.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미지급에 대한 개선방안

1) 수급인의 간접비 전가를 부당특약 유형으로 설정

□ 공기 연장시 발생할 수 있는 간접비를 하수급인에게 전가시키는 내용을 기존 특약의 유형 외에 새로운 유형의 부당특약으로 설정함.

-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권을 전면 부정하는 것은 계약상대방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약정으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의 부당특약에 해당함.
- 간접비 청구권 포기 합의가 하도급법시행령⁴⁾ 이외 건설산업기본법도 부당특약에 포함시켜 관련한 합의는 무효가 될 수 있도록 함.

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부당한 특약으로 보는 약정)법 제3조의4제2항 제4호에서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을 말한다.

1.~2. 생략

3. 해당 하도급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간접비(하도급대금 중 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인정범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약정. 다만,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의 계약에서 정한 간접비의 인정범위와 동일하게 정한 약정은 제외한다.

4.~5. 생략. 참고

〈표 4-4〉 간접비 부당특약관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p>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p> <p>제34조의8(부당특약의 유형) 법 제38조제2항 후단에 따른 부당한 특약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법 제22조에 따라 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보험료를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특약</p> <p>2. 법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급인이 부당하게 하수급인에게 각종 민원처리, 임시 시설물 설치, 추가 공사 또는 현장관리 등에 드는 비용을 전가하거나 부담시키는 특약</p> <p>3.~7. 생략</p>	<p>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p> <p>제34조의8(부당특약의 유형) 법 제38조제2항 후단에 따른 부당한 특약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법 제22조에 따라 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보험료를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특약</p> <p>2. 법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급인이 부당하게 하수급인에게 각종 민원처리, 임시 시설물 설치, 추가 공사 또는 현장관리 등에 드는 비용 간접비(하도급대금 중 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등을 전가하거나 부담시키는 특약</p> <p>3.~7. 생략</p>

2) 수급인의 간접비 지급 여부 상관없이 하수급인의 간접비 지급

- 건설하도급 계약이행과정 중 공기 연장 등으로 당초 계약금액 이외 발생하는 추가비용과 이에 따른 간접비가 발생하며, 귀책사유 여부에 따라 추가비용의 부담주체가 달라짐.
- 시공사의 귀책이 없는 공기연장으로 추가비용이 발생하였으나, 발주기관은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간접비를 미지급하는 사례가 빈번하며, 원사업자도 발주자의 부족한 예산을 이유로 자신들의 간접비만 청구함.

- 발주자로부터 간접비를 증액 받은 경우 자신들의 간접비만 받았다고 주장하고 수급사업자에게는 미지급하여 결국은 수급사업자에게 간접비 부담 전가시 근로자 임금 및 자재·장비대의 체불 등 발생함.
- 공사 기간이 연장되면서 원도급 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원사업자는 그 비율만큼 하도급 금액을 반드시 증액해 주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그러나 원도급 금액이 증액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도급업체의 귀책사유 없이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에 대해 하도급 대금의 증액 요청이 가능하도록 함.
- 하수급인은 수급인의 지시에 따라 공기연장을 시행하였다면 발주자의 공사비 증액 여부와 상관없이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 공사비 및 간접비가 지급되도록 함.
-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⁵⁾에도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경우 발생하는 추가공사비는 발주자로부터 증액 받지 못했더라도 수급사업자에게 증액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원도급 금액이 증액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 그 공기연장이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하도급대금 조정 대상이 되도록 함.(하도급법 일부 개정안에 관련하여 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의원입법 내용 일부 참고)

5) 표준하도급계약서(건설업종) 제11조(추가·변경공사에 대한 서면 확인 등)

③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추가·변경공사에 대해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증액을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수급사업자에게 증액하여 지급한다.

- 원사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시한 추가위탁 또는 설계변경, 공사기간 연장 즉 목적물 등의 납품 등 시기의 변동으로 인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추가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증액 받지 못한 경우도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요건으로 하도급법 제16조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함.

〈표 4-5〉 수급인의 간접비 지급관련 하도급법 개정안(1)

현 행	개 정 안
<p>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p> <p>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때에는 그가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감액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p> <p>1.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p> <p>2. 생략</p>	<p>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p> <p>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때에는 그가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감액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p> <p>1. 설계변경, 목적물의 납품 등 시기의 변동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p> <p>2. 생략</p>

-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도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요건으로 하도급법 제16조의2(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①항을 개정하여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신청이 가능하도록 함.

〈표 4-6〉 수급인의 간접비 지급관련 하도급법 개정안(2)

현 행	개 정 안
<p>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p> <p>① 수급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후 목적물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하도급대금의 조정(調整)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p> <p>〈신설〉</p> <p>〈신설〉</p> <p>② ~ ⑧생략</p>	<p>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p> <p>① 수급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하도급대금의 조정(調整)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p> <p>1. 목적물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는 경우</p> <p>2.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목적물등의 납품등 시기가 지연되어 관리비 등 공급원가 외의 비용이 변동되는 경우</p> <p>② ~ ⑧생략</p>

□ 최근 발주자와 수급인간의 장기계속공사의 연차별 계약시 간접비 지급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주목을 끌고 있음. 논쟁이 되고 있는 대법원 판례(2014다235189 공사대금)의 경우 연차별 계약과 총공사금액의 공사금액의 문제임.

□ 대법원 판결은 발주자와 수급인간의 장기계속공사에 미치는 것으로 다른 공사 계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다만 원수급인이 간접비를 지급받지 못하면 그에 따라 하수급인이 간접비를 투입한 경우 이를 지급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서 사실상 불이익을 받는 여지가 있다고 판단함.

□ 수급인의 지시에 따라 하수급인이 시공할 때,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간접비는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공사금액을 증액 받지 못했더라도 하수급인에게 간접비를 지급하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판례에서 장기계약공사로서 발주자와 원도급사 간의 합의에 의해 공기 연장이 반영된 연차별 도급계약이 체결되어 공기연장 비용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임.

□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수급인의 간접비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하수급인이 간접비 지급 확보방안은 하수급인의 간접비 확보시 보다 유용하게 활용될 것임.

3) 공기연장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규정 마련

□ 공기 연장시 발생하는 추가공사비 즉 간접비 부분에 대한 하도급금액 조정사유를 명시하여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증액 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할 수 있도록 규정함.

- 현행 하도급법은 국가·지방계약법령⁶⁾과 달리 공기연장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제조등의 계약에 있어서 제64조 및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개정 1996. 12. 31.> ② ~ ③ 생략

- 공사기간 연장 등으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간접비 등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지급받은 경우 수급사업자에게도 발주자로부터 받은 비율대로 적정하게 지급받을 수 있는 하도급법 규정을 신설함.

〈표 4-7〉 공기연장에 따른 하도급법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p>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때에는 그가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감액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p> <p>1.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p> <p>2. 제1호와 같은 이유로 목적물등의 완성 또는 완료에 추가비용이 들 경우</p> <p>② ~ ④ 생략</p>	<p>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때에는 그가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감액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p> <p>1. 설계변경, 공사기간 연장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p> <p>2. 제1호와 같은 이유로 목적물등의 완성 또는 완료에 추가비용이 들 경우</p> <p>② ~ ④ 생략</p>

4) 하도급업체의 적극적 대응 필요

- 하수급인의 간접비 계상을 위한 하도급업체의 적절한 대응방안 또한 필요함. 즉, 공기연장 등 추가공사관련 각종 증빙서류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및 계약서류 등 공사비 투입근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 및 변경 계약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것임.

-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공사를 포함한 하도급계약은 원칙적으로 서면을 통해 이루어지지만, 현장여건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서면 계약이전에 추가 및 변경공사가 이뤄질 경우 반드시 추후 관련 서류보완이 필요할 것임.

-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공사비관련 예정공정표는 공사기간의 연장에 따른 간접비를 청구할 수 있는 중요한 문서가 되므로 관리가 필요할 것임.

□ 공기연장 간접비를 청구하고자 한다면 간접비 청구권 포기와 관련된 합의는 지양해야 함.

- 부득이하게 간접비 포기와 관련된 합의서 등을 작성해야 한다면 부득이 이런 합의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대한 충분한 증거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임.

3. 발주자 및 공사감독관의 관리감독 및 조정시스템 기능 강화

□ 건설공사는 발주자와 수급인, 하수급인 사이의 단계별 계약으로 발주자와 수급인의 공기연장 등 변경계약 이행후 하수급인과의 공기 연장 시 발생하는 추가공사금액 발생 시 계약이행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발주기관에 시스템강화 및 관리 감독을 통해 간접비를 포함한 추가공사비 지급을 보다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간접비 미지급 여부를 관계당국에서 수급인과 발주자를 수시로 관리 감독하여야 하며 하수급인의 간접비 미지급 실태파악에 힘써야 할 것임. 즉 정부는 주기적이며 지속적으로 정확한 간접비 미지급 실태를 파악하여 향후 개선방안 마련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임.
- 공기 연장시 발주자인 감독역량이 간접비 지급의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즉, 간접비를 미지급하는 경우는 그 경우가 모호한 경우가 많은데 간접비 지급 기준의 제시 등 발주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할 것임.
- 최근 LH는 하도급업체에 가설 사무실 비용을 공사원가에 반영하여 공사기간 연장시 하도급업체가 지출한 비용도 정산 받을 수 있도록 관련기준을 정비할 계획임.
 - 가설사무실 지원 비용은 토목공사 현장부터 적용되어, 이동식컨테이너 사무실의 설치·해체비용, 전기, 통신료와 같은 운용비 등을 포함함.

4.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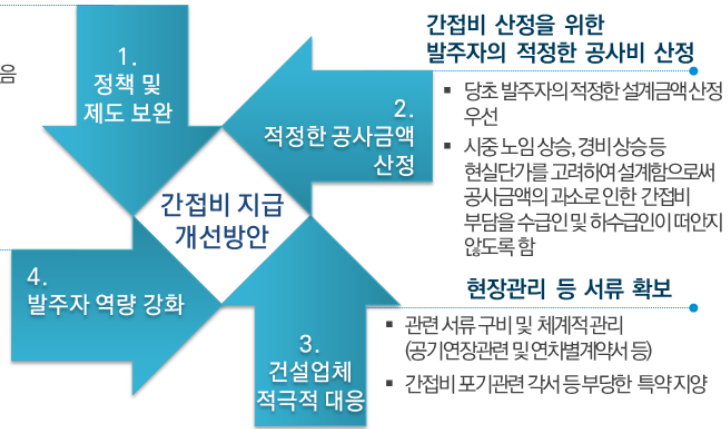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건설공사의 간접비용이 적절하게 지급 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개선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뿐만 아니라 발주기관의 예산 부족 문제, 하도급공사에 있어서 합리적인 간접비 산정과 지급 등 건설업체의 현장관리를 위한 서류 확보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임.

**간접공사비 지급관련
법령 개선(하도급법, 건산법 등)**

- 전문건설업체가 적극적으로 대처방안을 마련하여 간접비를 스스로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하도급법, 건산법 개정 및 보완

**관리감독 및
조정시스템 강화**

- 적극적인 모니터링
- 정기적이며 지속적인 관리감독



[그림 4-2] 하도급 간접공사비 개선방안 종합

- 하도급거래는 근본적으로 경제적 힘의 불균형이 존재하기 때문에 불공정한 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사회적 약자인 하수급인이 수급인과의 거래관계에서 상호 대등한 계약관계가 형성되기 어려운 실정임.

- 전문건설공사의 간접비 미계상 실태 및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전문건설업체면담과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건설하도급분쟁 상담사례,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 사례를 통해 간접비 미계상 유형 및 실태를 파악하였음.

- 본 연구는 적정한 간접비 지급을 위해 간접비 지급 실태 분석하여 하수급인의 간접비 지급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안하였음.

- 전문건설업체의 간접비 미지급은 근본적으로 원·하도급의 불공정한 거래구조로 인한 것으로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어 건설공사의 하도급을 받는 전문건설업체가 적극적으로 대처방안을 마련하여 간접비를 스스로 확보하기에는 한계를 안고 있었음.

- 원·하도급구조상 하수급인은 향후 공사수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법적 처벌조항을 강화하여 원도급사의 간접비 미반영을 방지하는 것은 그 한계가 있음.

- 건설분쟁조정실태의 경우 공사대금 미지급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중 추가공사비 미지급이 전체 분쟁건수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해당금액의 45%를 차지하고 있음.

- 간접비 미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모두의 종합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적정한 설계내역서 작성과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발생에 대한 적극적인 모니터링, 정기적이며 지속적인 관리감독 등을 통해 간접비 미지급 관행을 단절하여 하수급인의 위험 부담 감소 및 하도급대금관련 분쟁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임.

- 본 연구는 하수급인의 간접비 계상실태를 파악하여 이에 발생하는 문제점을 도출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제도적 측면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음.

참 고 문 헌

- 김용균, 건설공사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용 관련 연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산업대학원 건설시스템공학과, 2016.
- 김태형, 간접비 소송의 주요 쟁점, 변호사, 2016.
- 김효정, 건설공사 계약기간 연장과 간접비의 산정방법에 관한 고찰,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법무학과, 2011.
- 이보라, 박승국, 추가변경공사에 대한 추가공사비 미지급실태 및 개선방안, 대한건설정책연구원, 2017.
- 이종광, 박승국, 건설하도급 공정거래 체감도 조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2017.
- 정기창, 공기연장 추가간접비 예측을 위한 산정모델, 동국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석사학위논문, 2016.
- 조동희, 공공공사의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문제의 제도적 개선 방안,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
- 조성환, 건축공사 원가계산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국가계약관련 법령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공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조현정, 하도급 간접공사비 계상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건축공학과 석사학위논문, 2017.
- 최민섭, 공기연장에 따른 합리적인 간접비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 황문환, 정유철, 이강만, 공공공사의 공기연장 이슈에 따른 간접공사비 최신 판례 조사 및 분석 -공기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관련 판례 중심으로-, 법무법인(유)울촌, 2017.
-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 2017.
- 김병욱 의원 대표 발의, 하도급법 일부 개정 법률안, 2018.
- 전문건설업 통계연보, 2018.

하도급공사 간접비 지급 개선방안

2019년 3월 인쇄
2019년 3월 발행

발행인 서명교

발행처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13층(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

TEL (02)3284-2600

FAX (02)3284-2620

홈페이지 www.ricon.re.kr

등록 2007년 4월 26일(제319-2007-17호)

인쇄처 경성문화사(02-786-2999)
